

최근 EU의 FTA 정책 동향과 향후 전망

- 강유덕 구미·유라시아실 유럽팀장
(ydkang@kiep.go.kr, Tel: 044-414-1123)
- 양효은 구미·유라시아실 유럽팀 전문연구원
(yhe@kiep.go.kr, Tel: 044-414-1042)

차 례 ●●●

1. 최근 EU의 FTA 추진 현황
2. EU의 FTA 추진전략 및 특징
3. 최근 추진 중인 EU의 주요 FTA
4. 향후 전망 및 시사점

주요 내용 ●●●

- ▶ EU는 한국과의 FTA에 이어 최근 싱가포르, 캐나다와 FTA 협상을 완료하였으며, 미국, 일본 등 거대 선진국은 물론 동남아, 중남미 신흥시장과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임.
 - EU는 2006년 글로벌 유럽 전략하에서 역외국과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한 이래, FTA의 외연을 확장하면서 선진국(캐나다, 미국, 일본)과 신흥시장(ASEAN 회원국, 중남미)을 상대로 동시에 FTA를 추진 중임.
 - 현재 협상 중인 FTA가 모두 체결될 경우 FTA 상대국과의 무역은 EU 총 역외무역의 2/3에 이를 전망
- ▶ 2013년 초부터 진행된 미국과의 FTA(TTIP)는 시장접근, 규제이슈, 통상규범의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 중이나, 당초 목표에 비해 지연될 가능성이 있음.
 - TTIP는 3대 분야, 24개 장(chapter)에 걸쳐 현재까지 10차 협상이 진행되었으며, 각 장별로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됨.
 - 투자자-국가소송제(ISDS) 및 투자법원 설립에 있어 논의가 진전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나, 규제분야에서 양측의 상이한 법률구조, 규제체제, 접근방식의 차이로 인해 협상이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음.
- ▶ 일본과의 FTA는 EU 측의 관세장벽 철폐와 일본 측의 비관세장벽 철폐가 교환되는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음.
 - 일·EU FTA는 2013년 초 협상개시 이래 현재 12차 협상까지 진행되었으며, EU는 일본의 비관세장벽 철폐, 정부조달시장 개방, 주요 수출품목의 관세인하, 지재권 강화 등에 초점을 두고 있음.
 - EU는 협상과정에서 일본 측의 비관세장벽 철폐여부를 협상지속의 조건으로 삼고 있는바, 협상과정에서 2차례에 걸쳐 비관세장벽 리스트를 일본 측에 전달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음.
- ▶ TTIP는 타결 시 글로벌 통상질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 양측의 차이 속에서 포괄적 FTA를 지향하는 만큼 지연될 가능성이 높으며, 일·EU FTA는 TPP 타결을 감안할 때 협상에 속도가 더해질 가능성이 높음.
 - TTIP는 비관세장벽 철폐, 글로벌 통상규범 제정에 초점을 두고 있어 기존의 관세협상에 비해 협상의 범위가 넓고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는바, 타결 목표시점인 2015년 말을 넘길 것으로 보임.
 - 일·EU FTA의 경우 현재의 협상 추이와 최근의 TPP 타결을 감안할 때 협상에 속도가 더해질 것으로 보이며, 기 체결 EU FTA의 사례를 감안할 때 발효까지는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 양 FTA는 한국의 4대 거대교역국(中, EU, 美, 日) 중 3개국의 양자 FTA인바, 협상 추진경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새로운 통상환경의 위협과 기회요인을 파악,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1. 최근 EU의 FTA 추진 현황

■ 2006년 ‘글로벌 유럽’ 전략하에 추진된 EU의 적극적·포괄적 FTA 정책은 한·EU FTA의 발효와 EU·싱가포르 FTA의 가서명, EU·캐나다 FTA의 타결 등 가시적 결과를 도출하기 시작

- EU는 2006년 9월 역외국과의 적극적인 FTA 추진을 골자로 하는 ‘글로벌 유럽(Global Europe)’ 전략을 발표하고, 2010년 11월에는 중장기 통상정책(2010~15년)을 통해 FTA의 외연확대 전략을 펼쳐왔음.
 - 글로벌 유럽 전략하에서 FTA 상대국 선정은 ① 시장잠재력 ② 시장진입장벽 ③ EU 경쟁국과의 FTA 추진여부 등 경제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한국·아세안·남미공동시장·인도 등이 우선 FTA 협상국으로 선정된 바 있음.¹⁾
 - EU는 2010년 중장기성장전략(2010~20년)인 ‘Europe 2020’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기존의 FTA 정책을 강화하고 비관세장벽 철폐 및 정부조달시장 개방요구, 지적재산권 강화 등을 포함하는 중장기 통상전략을 수립하였음.²⁾
- 한·EU FTA는 글로벌 유럽 전략하에서 체결된 EU의 첫 번째 FTA로 발효 5년차에 접어들었으며, 캐나다 및 싱가포르와의 FTA도 각각 타결이 이루어짐.
 - 한·EU FTA는 EU가 지금까지 추진한 가장 포괄적인 FTA로, EU는 이 FTA를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와의 FTA 협상에 서 기본틀(template)로 활용하고 있음.
 - EU·싱가포르 FTA는 2010년 3월 협상을 시작한 이래 2013년 9월 가서명이 이루어졌으며, 이후 투자 부문에 대한 잔여 협상이 완료됨으로써 협상의 모든 절차가 완료(2014년 10월)되었음.
 - EU·캐나다 FTA는 2009년 5월 협상개시 후 2013년 10월 협상타결이 이루어졌고, 2014년 9월에는 잔여 부문이었던 투자자·국가 소송제(ISDS)까지 포함하는 협상이 최종 완료되었음.

표 1. EU의 FTA 추진 현황(2015년 9월)

지역	국가	경과	협상 추이
아시아	한국	▶ 2011년 7월 발효	
	싱가포르	▶ 2007년 5월 EU·ASEAN FTA 추진에 합의 ▶ 2009년 3월 이후 EU와 ASEAN 개별 회원국 간의 협상으로 변경 ▶ 2010년 3월 협상 시작, 2012년 12월 타결	2013년 9월 가서명(9.20) 2014년 10월 최종협상 완료(10.17)
	인도	▶ 2007년 6월 협상 개시 ▶ 2013년 12차 협상 이후 잠정보류	잔여쟁점: 상품시장 개방, 서비스, 정부조달, 노동환경
	말레이시아	▶ 2010년 10월 협상 시작	2012년 4월 7차 협상 완료 이후 협상 부진
	베트남	▶ 2012년 6월 협상 개시	2015년 8월 협상 타결 현재 투자 chapter 협상 중
	태국	▶ 2013년 3월 협상 개시	2014년 4월까지 4차 협상 진행 후 잠정보류
	일본	▶ 2012년 11월 EU 이사회가 협상 승인	2013년 4월 1차 협상 시작 2015년 9월 12차 협상 완료

1) COM(2006), Global Europe: Competing in the World, 567 final. ‘글로벌 유럽’ 전략은 역외 교역·투자 확대를 통한 EU 경제성장률 제고를 목표로 하며, DDA 협상 지체, 미국의 경쟁적인 FTA 정책, 아시아 신흥국의 부상 등이 대외적 요인으로 작용함.

2) Trade, Growth and World Affair: Trade Policy as a Core Component of the EU's 2020 Strategy, COM(2010)612.

표 1. 계속

지역	국가	경과	협상추이
북미	캐나다	▶ 2009년 5월 협상 개시 ▶ 2013년 상반기 중 협상 완료가 목표였으나, 두 차례 시한을 넘김.	2013년 10월 협상 타결(10.18) 2014년 9월 협상 최종완료(9.26): 투자 chapter 포함.
	미국	▶ 2013년 2월 EU 집행위원장,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미 대통령 공동서명 발표를 통해 FTA 협상 공식화 ▶ 2015년 말 타결 목표였으나 지연될 가능성이 높음.	2013년 7월 1차 협상 시작 2015년 7월 10차 협상 완료
중남미	콜롬비아/페루/ 에콰도르 (안데스 공동체)	▶ 2010년 2월 협상 완료, 2012년 6월 서명(페루, 콜롬비아) ▶ 12월 유럽의회의 비준완료(EU 측 공식절차 완료) ▶ 2014년 1월 에콰도르와의 협상 시작, 7월 협상 타결 ▶ 볼리비아 포함(이상 안데스 공동체) 모색 중	2013년 3월(페루), 8월(콜롬비아) 잠정발효 2014년 12월 에콰도르와의 협정 가서명
	중앙아메리카	▶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6개국) ▶ 2010년 5월 협상 완료, 2012년 6월 서명 ▶ 2013년 12월 유럽의회의 비준완료(EU 측 공식절차 완료)	2013년 8월(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10월(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12월(과테말라) 잠정발효
	남미공동시장 (MERCOSUR)	▶ 1999년 협상 시작 후 2004년 협상 중단 ▶ 2010년 5월 협상 재개	협상 재개 후 2012년 9월 9차 협상 진행
북아프리카· 중동	Euro-Med	▶ 1995~2002년 사이 제후협정 체결 ▶ 이집트, 요르단, 모로코, 튀니지와 개별 FTA 체결을 위한 협의 진행 중	2013년 3월 모로코와 FTA 협상 개시 후 4차례 협상 진행
	GCC	▶ 2008년 협상 중지	
동유럽	우크라이나	▶ 제후협정의 일부로 FTA 추진, 2012년 7월 가서명 ▶ 2014년 6월 서명	우크라이나 측의 비준대기
	조지아	▶ 2014년 6월 협상 서명, 9월 잠정발효	
	몰도바	▶ 2012년 2월 협상 시작 ▶ 2014년 6월 협상 서명, 9월 잠정발효	

주: 1) 남미공동시장: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2) Euro-Med(가입연도): 이집트(2004), 이스라엘(2000), 요르단(2002), 레바논(2006), 모로코(2000), 알제리(2005), 튀니지(1998), 팔레스타인(1997 잠정발효), 시리아(중단).

3) 걸프협력회의(GCC):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자료: <http://ec.europa.eu/trade>로부터 저자 정리.

■ 2010년 이후 EU의 FTA 정책에서 가장 큰 변화는 다양한 형태의 협정을 통해 FTA의 외연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도국 및 선진국과의 FTA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음.

- ‘글로벌 유럽’ 전략하에서 EU는 한·EU FTA 수준의 포괄적 FTA 추진을 원칙으로 삼았으나, 2010년 이후에는 FTA 대상국을 확대하기 위해 상대국의 상황에 따른 차별화된 FTA를 추진함.
 - 2010~12년 동안 협상이 완료·서명된 콜롬비아, 페루, 중앙아메리카와의 FTA는 기존의 일반특혜관세(GSP)를 FTA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추진된 것으로, 양허수준 및 포괄범위가 한·EU FTA에 비해서는 낮은 것으로 보임.
 - EU는 싱가포르에 이어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등 아세안 회원국과 개별적으로 FTA를 추진 중이며, 2014년부터는 미 인마와 투자협상을 시작함.
- 가장 괄목할 만한 변화는 2012년 이후 협상을 추진 중인 미국 및 일본과의 FTA로, 이는 EU가 실질적으로 기존의 다자체제에서 벗어나 양자 FTA 중심의 통상체제 구축에 주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³⁾

- 미·EU FTA(TTIP: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는 2013년 2월 FTA 협상을 공식화하였고, 2013년 7월에 1차 협상을 시작한 후 현재 10차 협상까지 진행된 상황
- 일·EU FTA는 2013년 4월 1차 협상을 시작한 후 현재 3차 협상까지 진행되었으며, 2015년 9월 12차 협상까지 진행
- TTIP와 일·EU FTA의 경우 글로벌 통상질서 및 비관세장벽 철폐에 역점을 두고 있는바, 향후 한국의 통상정책에도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음.

■ 이에 본고에서는 ① 최근 EU의 FTA 정책에 대해 성과 및 특징을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EU FTA 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② EU가 추진 중인 대형 FTA(미국, 일본)의 추진현황을 점검함으로써 향후 전망 및 한국의 통상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 EU의 FTA 추진전략 및 특징

- 2009~14년 동안 EU의 통상정책에서 주요한 진전사항은 ① 양자 FTA 추진의 성과 ② 다자협상의 일부 진전 ③ EU 통상법체계의 정비³⁾를 들 수 있음.
- [양자 FTA] 2006년 글로벌 유럽에 근거하여 추진(한국, 싱가포르)되었으며, 그 이후 FTA의 외연을 확장하면서 선진국(캐나다, 미국, 일본)과 개발도상국(중남미, ASEAN 회원국)을 상대로 동시에 FTA 협상을 추진하였음.
 - 발효된 FTA(시점): 한국(2011년 7월), 페루(2013년 3월), 콜롬비아(2013년 8월), 중앙아메리카(2013년 8~12월)
 - 서명 또는 타결된 FTA: 싱가포르(2014년 10월 협상완료), 캐나다(2014년 9월 협상완료), 베트남(2015년 8월 타결), 에콰도르(2014년 12월 가서명)
 - 협상 중인 FTA: 미국, 일본, 인도, 말레이시아
 - [다자협상] 2013년 12월 무역원활화 협정(Bali Package)이 타결된 이후, 유럽의회의 비준(2015. 9. 9)을 거쳤으며, 복수국 서비스무역협정(TiSA)은 12차 협상까지 진행 중임.
 - [통상법 체계의 정비] 2014년 1월부터 개정된 일반특혜관세(GSP)를 적용하였고, 싱가포르, 캐나다와의 FTA에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S)를 포함하는 투자 장(Investment Chapter)을 포함시킴으로써 투자부문을 EU의 통상법 체계 내로 편입시킴.
 - GSP 개정: 새롭게 개정·발효된 GSP에서는 수혜국 수를 과거 176개국에서 90개국으로 대폭 축소하였으며, 인권, 노동 및 환경, 거버넌스 개선을 조건으로 일부 국가에는 특혜를 강화한 GSP+를 적용
 - EU 투자정책의 정비: 싱가포르, 캐나다와 추진한 FTA에서는 가서명 이후 투자부문을 추가적으로 협상하여 FTA 안에 포함시켰으며,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EU 집행위'로 지칭)는 최근 미국과의 FTA와 향후 EU의 투자 협상을 위해 투자법원제도(Investment Court System)를 제안함(2015. 9. 16).

3) 본고에서는 언론 등의 관례에 따라 EU가 한국, 미국, 일본과 추진한 FTA의 경우 한·EU FTA, 미·EU FTA(TTIP), 일·EU FTA로 표기하고, 그 외의 FTA에서는 EU를 먼저 명시하도록 함(예: EU·싱가포르 FTA).

■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FTA가 모두 체결될 경우 FTA 상대국과의 무역은 총 EU 역외무역의 2/3를 차지할 전망

-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현재 EU 총 역외무역의 1/3이 FTA 체결 상대국과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협상 중인 FTA가 모두 체결될 경우 FTA를 통한 무역은 총 역외무역의 2/3에 이를 전망이다.
- EU 집행위는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FTA(미국, 일본 포함)가 모두 발효될 경우 EU GDP의 2%(2,500억 유로)에 해당하는 성장효과와 2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함.⁴⁾

표 2. FTA 상대국에 따른 EU의 수출입 및 투자 현황

(단위: %)

	상품 (2014년)		서비스 (2013년)		FDI (2013년 누적기준)	
	수입 중	수입 중	수입 중	수입 중	유입 중	해외투자 중
발효된 FTA	27.1	31.1	26.6	29.1	18.1	24.3
칠레	0.5	0.4	0.3	0.5	0.1	0.5
멕시코	1.1	1.7	0.7	1.1	0.6	2.1
남아공	1.1	1.4	0.8	1.0	0.2	0.9
EFTA, 터키	14.3	15.8	15.9	19.3	13.9	16.2
EPAs: 카리브-태평양 EPA: 카메룬	0.6	0.8	1.6	1.0	1.0	0.5
한국	2.3	2.5	1.1	1.5	0.5	0.7
지중해 국가	5.0	6.0	4.3	2.9	1.6	2.0
서발칸	0.9	1.4	0.7	0.7	0.0	0.6
조지아, 몰도바	0.1	0.3	0.1	0.1	0.0	0.1
콜롬비아, 페루	0.8	0.6	0.4	0.5	0.1	0.5
중앙아메리카	0.4	0.3	0.5	0.5	0.1	0.2
타결, 서명된 FTA	6.8	7.2	6.9	8.1	4.6	8.8
우크라이나	0.8	1.0	0.5	0.7	0.0	0.6
싱가포르	1.0	1.7	2.5	2.3	1.2	1.9
캐나다	1.6	1.9	2.1	2.5	3.1	4.6
에콰도르	0.2	0.1	0.1	0.1	0.0	0.1
EPAs: WA, EAC, SADC	3.2	2.5	1.7	2.5	0.4	1.6
협상 중인 FTA	29.3	31.6	41.9	37.9	50.7	45.5
인도	3.2	3.1	2.7	3.5	4.2	1.6
미국	12.2	18.2	30.1	25.5	43.7	34.4
ASEAN	5.0	3.0	2.8	2.1	0.4	1.3
말레이시아	1.2	0.8	0.6	0.6	0.4	0.4
베트남	1.3	0.4	0.3	0.2	0.0	0.1
태국	1.1	0.7	1.1	0.5	0.0	0.2
Mercosur	2.7	3.0	1.8	3.3	1.8	6.6
인도	2.2	2.1	2.3	1.6	0.2	0.7
중앙아프리카	0.4	0.3	0.2	0.5	0.0	0.2
기타	36.8	30.0	24.6	24.9	26.6	21.5

주: 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WA: West Africa, EAC: Eastern African Community, SADC: 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5), "How Trade Policy and Regional Trade Agreements Support and Strengthen EU Economic Performance," p. 10. (March 25)

4) European Commission(2012), "External sources of growth? Progress report on EU trade and investment relationships with key economic partners," SWD(2012) 219. (July 18)

■ 최근 EU의 FTA 정책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으로는 ① 성장 및 고용창출과 연계 ② FTA 기본틀(template)의 성립 ③ FTA의 외연확장을 들 수 있음.

- [성장 및 고용] EU의 FTA 정책은 2006년에 발표된 글로벌 유럽의 기본 기초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 위기를 거치면서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과 연계하여 더욱 강화되는 추세를 보여 왔음.
 - 향후 10~15년 동안 세계 경제성장의 90%가 유럽 외 해외경제에서 창출될 것으로 예상됨.⁵⁾
 - EU 집행위에 따르면 EU의 총 고용 중 14%에 해당하는 3,100만 개의 일자리가 EU의 역외수출에 의해 유지되며, 1억 유로의 수출증대는 14,000개의 추가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추정됨.⁶⁾
- [FTA의 기본틀] 한국, 싱가포르, 캐나다와의 FTA를 거치면서 EU가 체결한 FTA는 여러 공통점과 동시에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EU의 FTA가 독자적인 틀을 마련해가는 가운데 상대국 통상정책과 절충 과정 역시 거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한국, 싱가포르와 체결한 FTA는 외형상 상호간의 유사점은 보이나, 캐나다, 중남미와 체결한 FTA에서는 차이를 보임.
- [FTA의 외연확대] EU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의 FTA와 동유럽, ASEAN 및 중남미 개발도상국과의 FTA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음.
 - [선진국과의 FTA] 한국, 싱가포르, 캐나다와 체결한 FTA에서는 포괄적 FTA를 지향하였으며, 미국, 일본과 추진 중인 FTA에서도 규제조화 및 비관세장벽 철폐에 초점을 둔 높은 수준의 FTA를 추진
 - [동유럽] 과거 근린외교 정책을 유지하되, 기존 제후협정의 무역부문을 더욱 강화시키는 포괄적 FTA(DC FTA: Deep and Comprehensive FTA)를 추진
 - [ASEAN 회원국] 적극적인 FTA를 추진하되 ASEAN의 경제통합을 반영하여 진행함(누적원산지조항이 대표적인 예).
 - [중남미] 기존의 '지역 대 지역'의 FTA 추진이라는 큰 틀을 유지하되, 개별국과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준비가 미진한 국가일 경우 향후 추가협상 방식으로 편입시키는 방법을 사용

3. 최근 추진 중인 EU의 주요 FTA

가. 미·EU FTA(TTIP)

■ EU-미국 간 FTA 추진여부는 2011~12년 동안 논의가 급진전되면서 양측의 높은 정치적 의지 속에서 TTIP 협상이 출범

- EU와 미국은 세계 총 GDP의 45%와 총 교역의 30%를 차지하는 선진시장으로, 양측은 서로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무역·투자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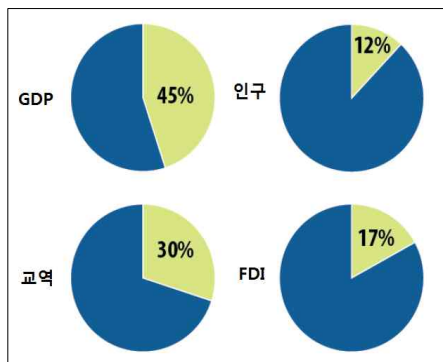
5) Jean Fouré, Agnes Benassy-Quere, Lionel Fontagne(2012), "The Great Shift: Macroeconomic projections for the world economy at the 2050 horizon," CEPII Working Paper, n°2012-3. (February)

6) European Commission(2015), "How Trade Policy and Regional Trade Agreements Support and Strengthen EU Economic Performance," p. 2. (March 25)

- 양측의 무역은 2008년 1조 달러에 이른 바 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로 감소하였으나 2011년 중 경제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한 이후 완만하게나마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EU 회원국의 대미 투자는 16조 달러로 미국으로 유입된 외국인투자의 62%(2012년)에 달하며, 미국의 대EU 투자는 이보다 많은 22조 달러로 EU로 유입된 전체 외국인투자의 50%를 차지함.
- 상호간의 교차투자로 인해 미국과 EU 간 무역 중 1/3이 대서양 양측에 위치한 계열사간의 기업 내 무역(intra-firm trade)으로 추정되는데,⁷⁾ 이는 양측의 기업계가 일찍부터 미-EU 간 FTA를 주장해왔던 주요한 배경임.

그림 1. 글로벌 경제에서 EU+미국 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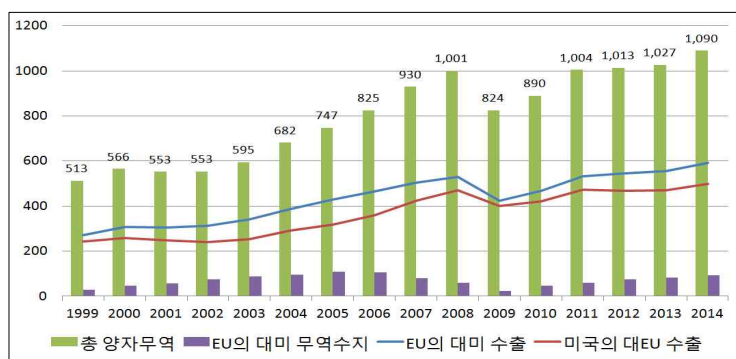
(단위: %)



자료: Akhtar and Jones(2014),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TTIP) Negotiation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p. 2, p. 9.

그림 2. EU와 미국의 교역(상품+서비스)

(단위: 십억 달러)



자료: Bureau of Economic Analysis.

- EU와 미국이 정부차원에서 공식적으로 FTA를 언급하기 시작한 것은 2011년 이후로, 2011년 11월 미·EU 정상회의 이후 추진여건이 빠르게 조성되었음.
- 2010년 11월에 발표된 EU의 중장기 통상백서에는 미국, 일본 등 거대경제국과의 통상협력은 포괄적 FTA가 아닌 비관세장벽 철폐 위주의 경제대화 방식을 따를 것임을 명시한 바 있음.⁸⁾
- EU 통상백서의 내용 등을 감안할 때, 적어도 2011년 상반기까지는 TTIP의 추진은 공식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됨.
- 2011년 11월 미·EU 정상회의에서 양측 정상은 양측의 통상장관을 대표로 하는 고위작업반을 구성하도록 지시한 바 있으며, 2012년 6월 고위 작업반이 중간보고서 발표를 통해 포괄적 FTA의 추진을 권고하면서 TTIP의 추진이 본격화됨.
- TTIP의 추진배경으로는 무역과 투자 촉진을 통한 성장 및 고용창출의 필요성, 안정적인 대서양 관계의 구축,

7) Hamilton and Quinlan(2012)에 따르면 기업 내 무역은 2010년 EU의 대미수출 중 60%를 차지하며, 미국의 대EU 수출 중 30%를 차지함. Hamilton, Daniel S. and Joseph P. Quinlan(2012), "The Transatlantic Economic 2012," Center for Transatlantic Relations, Vol. 1.

8) 2010년 11월에 발표된 EU의 신통상백서(Trade, Growth and World Affairs)에 따르면 EU는 ASEAN 회원국 및 인도, 캐나다, MERCOSUR와는 FTA 협상을 추진하되,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거대무역국과는 무역장벽을 낮추기 위해 포괄적 FTA가 아닌 규제 등 비관세장벽 철폐 위주의 협상을 추진할 것임을 천명함. 특히 미국과의 통상관계에 있어서는 범대서양경제회의(TEC: Transatlantic Economic Council)와 같은 협의체를 활용할 것임을 밝히고 있음.

글로벌 규범 제정에서의 우위 유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함.

- 2013년 초 TTIP 협상을 선언할 당시, 양측은 협상타결의 1차 시한을 2014년 말로 정했을 정도로 빠른 협상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갖고 출발했음.
 - 2014년 말을 협상타결을 위한 1차 시한으로 정한 이유는 바로소 EU 집행위원장(Jose Manuel Barroso)의 임기가 2014년 10월까지였던 데 기인함.
 - 당시 많은 언론보도는 지나치게 빠른 스케줄로 평가한 바 있으나, 양측은 협상개시 6개월 동안 3차례의 공식협상을 진행시킴으로써 FTA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함.
 - 2014년 11월에 출범한 융커(Jean Claude Juncker) 집행위원회도 TTIP를 정책적 우선순위로 삼고, 2015년 연내 타결을 목표로 설정한 바 있음.⁹⁾
- EU와 미국 간의 FTA는 현재까지 진행된 양자 협정 중 최대 규모로, 포괄적 협정이 체결될 경우 EU의 연간 GDP가 약 0.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미국과 EU의 이미 높은 시장 개방도와 평균 2% 미만인 낮은 관세율을 감안할 때, 협상의 관건은 규제조화를 통한 비관세장벽 해소 및 총 수출 증가에 있으며, 총 예상 경제효과의 80%는 서비스 무역 자유화 및 정부조달 시장 관련 규제완화를 포함하는 비관세장벽의 해소에서 올 것으로 예상됨.¹⁰⁾
 - 비관세장벽의 해소와 규제조화 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뤄져 포괄적인 TTIP 협정이 체결될 경우, EU에는 연간 최대 1,190억 유로, 미국에는 연간 최대 950억 유로의 GDP 증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매년 EU 가구당 평균 545유로, 미국의 경우 655유로의 추가 소득으로 환산됨(표 3 참고).
 - 포괄적 TTIP 체결에 따른 EU의 대미 수출 예상 증가율은 28%(약 1,870억 유로)이며, 유럽과 미국의 총 수출은 각각 6%와 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표 3. 협정 수준에 따른 거시경제 효과

(단위: 백만 유로)

GDP 증가	관세 부문 (tariff only)	서비스 부문 (services only)	정부조달 부문 (procurement only)	포괄적 협정 (comprehensive and ambitious agreement)
EU	23,753	5,298	6,367	119,212
US	9,447	7,356	1,875	94,906

자료: Centre for Economic Policy Research(2013).

■ TTIP 협상은 ① 시장접근 ② 규제이슈(비관세장벽) ③ 통상규범(규칙)의 3개의 분야로 구분되어 24개 장(chapter)에 걸쳐 진행되고 있음.

- EU 집행위는 각 장(chapter)별 협상목표 및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표 4]에 정리된 바와 같음.¹¹⁾

9) Politico(2015), "Merkel and Juncker aim to conclude TTIP this year." (April 3)

10) Joseph Francosi,(2013), "Reducing Transatlantic Barriers to Trade and Investment - An Economic Assessment," Centre for Economic Policy Research, London. (March)

11) TTIP 협상의 투명성에 대한 시민사회의 비판이 계속되자, EU 집행위는 transparency initiative의 일환으로 각 장(chapter)별 협상목표 및 입장(position paper), 미국 측에 전달한 협정문을 공개하고 있음.

<http://trade.ec.europa.eu/doclib/press/index.cfm?id=1230#market-access>(검색일: 2015. 10. 7).

표 4. TTIP의 각 장별 EU의 협상 목표

협상 분야	장(chapter)		EU의 협상 목적
시장접근	상품무역 및 관세		• 무역장벽 철폐, 유럽경제의 성장 및 고용창출 제고, 유럽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기여
	서비스		• EU와 미국의 서비스 기업 간 균등한 경쟁여건 조성 • 공공서비스에 대한 EU 회원국 정부의 세이프가드 권한 확보
	공공조달		• 미국의 공공조달시장에 참여 확대 • 미국기업과 균등한 경쟁여건 확보
	원산지 규정		• 유럽과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TTIP의 관세혜택 부여 • 생산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규정 제정
규제이슈	규제 일관성		• 양측 규제의 호환성을 증진시킴으로써 고용과 성장 촉진 • 소비자 선택권의 확대
	TBT		• 제품의 기술요구 사항에서 양측의 협력개선 • 불필요한 중복검사요구 완화 • 양측의 규제에 대한 정보접근성 개선
	SPS		• 대미 수출농산품에 대한 미국 측의 수입검사기간 단축 • 동물복지 관련 양측 규제당사자간의 보다 긴밀한 협력 추구 • EU의 엄격한 식품안전기준 고수
	8대 산업분야	화학	• 현행 협력체제를 활용, 양측 규제당국간에 보다 긴밀한 협력 추구 • 양측 규제 차이에 기인한 불필요한 비용발생 최소화 • 안전 및 환경보호 관련 EU의 엄격한 기준 준수
		화장품	• 안전검사 및 제품 라벨링 등에 있어 양측 규제당국의 긴밀한 협력 • 신규제품의 검사 및 승인과 관련된 소요시간 최소화
		엔지니어링	• 양측의 기술요구사항 및 검사방법을 균등하게 조율 • EU의 높은 기준 유지 • 엔지니어링 상품의 수출입 원활화
		의료기기	• 의료기기에 대한 접근 및 이력관리 제고 • EU의 높은 안전기준 유지
		정보통신기술	• 규제집행 및 소비자 보호방안 개선, 불필요한 비용 최소화 • EU 기업의 미국시장 진출에 기여
		제약	• 의약품에 대한 엄격한 기준 및 효율성, 품질, 안전 제고에 기여 • 신약개발과 관련된 규제도입에서 상호간 협력 지원
		섬유	• 양측 규제당국간의 협력 증진(원산지, 관세, 라벨링, 안전 등)
		자동차	• 양측 기준의 동등성 확인(상호인정), 일부 규정의 경우 조율화 추진 • 글로벌 규정을 개발하고, 신규규정 도입 시 상호 협력
통상규범	지속가능한 개발(노동 및 환경)		• 노동 및 환경 관련 기본법 준수 • TTIP 이행에서 시민사회의 참여를 유도하고 기업의 사회적 참여 독려
	에너지 및 원자재		• 에너지 및 원자재 조달과 관련 규칙과 경쟁에 기반을 둔 개방적이고 지속가능한 여건 조성 • 현존 제약사항을 철폐하고 그린 에너지 개발 추구
	관세 및 무역원활화		• EU와 미국 간 교역에서 통관관련 업무 간소화 • 통관규정을 준수한 상품만 교역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강화
	중소기업		• 250인 이하 중소기업의 대미 수출입 업무 지원
	투자보호 및 투자자-국가 분쟁해결		• EU 기업의 대미국 투자에서 미국기업과의 균등한 경쟁여건 조성 • 현행 투자자 보호시스템 개정
	경쟁		• 양측 기업의 가격담합 및 시장지배력 남용 억제 • 민간기업이 국영기업과 균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계열 기업간 거래에서 투명성 확보
	지재권 및 지리적 표시제		• 양측의 공동 원칙 및 긴밀한 협력방안 마련 • 혁신 및 연구에 대한 투자 촉진
	정부간 분쟁해결		• TTIP 이행에서 양측 정부간의 이견 발생 시 원활한 해결 메커니즘 설립 • 현행 WTO 체제에 기반을 둔 제도 설립

자료: European Commission, <http://trade.ec.europa.eu/doclib/press/index.cfm?id=1230#market-access>(검색일: 2015. 10. 7)에서 정리.

■ 2013년 2월 협상에 합의한 이후 같은 해 7월 1차 협상을 시작으로 2015년 7월까지 10차 협상을 완료하였으나, 협상 초기의 조기타결에 대한 기대와는 달리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 협상이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음.

- 미국과 EU는 협상 타결 목표를 2015년 말로 정했으나 지난 7월에 열린 10차 협상 이후에는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인 2017년 1월 말까지 협상을 타결하는 것도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음.
- TTIP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상이한 경제상황, 법률구조, 규제체계, 그리고 접근방식의 차이로 인해 협상이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음.
- 특히 유럽 내의 소비자단체 및 환경단체들은 TTIP를 통한 규제 완화 및 기준 통일로 인해 유럽 국가들의 규제 권한이 축소되고 유럽 시장 내 서비스 및 상품의 질이 낮아질 것을 우려해 협상에 반대하고 있음.
- 협상 초기부터 프랑스는 국내 주요 산업에 타격을 줄 것을 우려해 영상 부문(Audio-visual)을 협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해 이 부분은 일단 협상에서 배제된 상황임
- EU는 데이터 보호 기준(data protection standards)을 TTIP 협상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임을 기본 입장으로 하고 있으며, 기존의 EU 데이터 보호조항을 고수하고 있음.
- TTIP 협상의 전개과정과 주요 내용은 다음 [표 5]와 같음.

표 5. 미·EU FTA(TTIP)의 전개과정

일시	내용
2011년 11월 28일	미·EU 정상회의 • 양측 정상은 양측의 통상장관을 대표로 하는 고위급 작업반(High Level Working Group for Jobs and Growth)을 구성하도록 지시
2012년 2월 22일	미 상원은 미·EU FTA 추진에 대한 찬성의사를 표명
6월 19일	고위급 작업반 중간보고서 발표 • 미·EU 간의 포괄적 무역·투자협정(이하 미·EU FTA로 지칭)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이 무역협정은 관세, 규제 및 비관세장벽,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재권을 포함할 것을 권고 • 미·EU가 각각 체결한 제3국과의 FTA를 조율하고 다자통상체계에 기여할 수 있는 통상규범을 제시하도록 제안
10월 23일	유럽의회는 미·EU FTA 추진에 대한 찬성의사를 표명 • 유럽의회는 2013년 상반기부터 FTA 협상을 추진하도록 EU 집행위에 협상 위임권을 승인
2013년 2월 8일	EU 정상회의에서 회원국 정상들은 미국과의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합의
2월 11일	고위급 작업반 최종보고서 발표 • 미·EU FTA(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의 3대 분야로 시장접근(분야 ①), 규제이슈 및 비관세장벽(분야 ②), 국제통상 규율 및 차세대 협력(분야 ③)을 제시 • 분야 ①은 통상적인 FTA와 유사하나, 분야 ②에 초점을 두고 일반적인 FTA보다 수준 높은 SPS plus와 TBT plus를 포함할 것임을 강조 • 분야 ③은 미·EU FTA에서 합의된 내용을 글로벌화하여 제3국과의 FTA를 조율하는 한편, 다자무역체제 정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포함
2월 12일	• 오바마 미 대통령은 연두교서(State of the Union)를 통해 EU와의 FTA 협상출범을 공식화
2월 13일	• EU 집행위원장,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미 대통령 공동성명 발표를 통해 FTA 협상시작을 공식화

표 5. 계속

일시	내용
1차 협상: 7월 8~12일	주요협상 분야의 선정: 농산물 및 상품에 대한 시장접근, 정부조달, 투자, 에너지 및 원자재, 규제, 위생 및 검역, 서비스, 지적권, 중소기업, 분쟁해결, 경쟁정책, 통관 및 교역 촉진, 국영기업
2차 협상: 11월 11~15일	- 투자, 서비스 교역, 에너지 및 원자재 규제이슈 등 논의 - 투자: 투자자유화 및 보호 협의 - 서비스: 국경간 서비스, 금융서비스, 통신서비스 및 전자상거래에 대한 협의와 특히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서의 시장접근 논의 - 규제: 기술장벽에 대한 규제 일관성 및 양측의 규제조화(양립성)가 강화될 필요가 있는 분야※ 협의 ※ 의료기기, 화장품, 의약품, 화학물질, 살충제, 정보통신기술(ICT), 자동차 - 에너지 및 원자재: 양측이 직면한 에너지 및 원자재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3차 협상: 12월 16~20일	비관세 장벽(각종 규제 및 안전기준) 조율 및 공통의 기준 마련
4차 협상: 2014년 3월 10~14일	3대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협상 - 시장접근: 관세(이미 offer 교환), 서비스, 공공조달(offer 교환방식 논의) - 규제(비관세장벽): 규제 일관성 및 양립성, TBT(이미 상호간 제출된 초안에 대한 논의), SPS(초안 작성의 배경에 관한 논의) - 통상규범: 노동 및 환경(기존 FTA 활용), 에너지 및 희귀자원(EU가 TTIP에 포함시키기를 희망), 관세행정 및 무역원활화(절차 간소화 추진)
5차 협상 5월 19~23일	- 관세, 서비스, 투자 및 정부조달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그중에서도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는 기술적 차이를 좁히는 데 집중 [규제이슈] 규제의 호환성을 촉진하기 위한 논의에 집중함. 특히 의료기기, 의약품, 화장품, ICT, 자동차 등에서 양측 규제의 호환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 중
6차 협상 7월 14~18일	[시장접근] 서비스 양허 관련 양자간 양허안을 교환하여 상세하게 논의했으며, 공공조달의 경우 중앙-지방 정부 등 모든 단계의 정부 기관에 내국민 대우를 적용하여 실질적인 접근 개선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 [규제분야] 수평적 분야에서는 표준, 적합성 평가 및 SPS 조치 등 다양한 분야의 규제 담당자들 간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는 방안을 논의함. 분야별로는 9개의 구체분야(의약품, 의료기기, 자동차, 화학물질, 엔지니어링, ICT, 직물, 화장품 등) 논의가 진행 [기타] 분쟁해결 분야에서는 통합협정문에 기반한 양측간 입장차이를 줄이려는 협상이 진행되었으며, 중소기업 챗터 및 무역원활화 챗터의 경우 통합협정문 마무리 작업에 돌입함. 지속가능한 발전의 경우 협정문에 양자가 목표로 하는 바를 담아낼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사전 논의 진행
7차 협상 9월 29일 ~10월 3일	[규제분야] 규제수립, TBT, SPS 등 수평적 규율을 포함한 의약품, 자동차, 화학제품 및 엔지니어링 같은 구체적 분야에 대한 규범 논의가 집중적으로 논의 - 규제분야는 잠재적 이익이 가장 큰 분야인 동시에 가장 협상하기 어려운 분야이며, 협상 팀은 다음의 세 가지 요소를 중시함. 공공정책 수준을 낮추지 않겠다는 표준, 규범협력을 통한 선도적 역할이라는 전략적 차원, 규범 호환성 [규칙분야] 에너지 및 자원, 통관 및 무역 원활화, 지적권 및 중소기업 등 4개 분야의 규칙에 대해 논의 [서비스] 양측은 양허안을 교환한 바 있으며, 금번 협상의 대부분을 양측 양허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에 집중
8차 협상 2015년 2월 6일	- 시장접근, 규범 이슈, 규칙 분야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보호 분야를 제외한 거의 전 분야의 협상이 진행 - 양측 수석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2015년 중 진전을 도출하기 위해 협상을 더욱 밀도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

표 5. 계속

일시	내용
8차 협상 2015년 2월 6일	• [시장접근] 상품관세, 서비스, 공공조달 등 세 분야의 시장접근 개선 논의가 최초로 모두 진행됨. • [규제이슈] 수평적 분야 논의 및 분야별(화학물질, 화장품, 의료기기, 자동차, 의약품, 식물, 엔지니어링 등) 규제 협력 논의가 진행됨. 환경, 소비자 보호, 안전 등 공익과 관련된 EU의 현 규범 수준을 낮추는 양측간 협의는 없음이 강조됨. • [규칙이슈] 지속가능한 발전, 분쟁해결제, 원산지규정, 중소기업 분야 등 기타 규칙 분야 논의가 진행됨. 중소기업의 정보접근 개선 요청, 불필요한 이중 부담 경감 등이 논의
9차 협상 4월 20~24일	• [시장접근] 관세, 농산물, 상품, 공공조달 부문에 대해 논의. 서비스 부문은 다음 협상으로 연기 - 세부 항목별 관세양허안 점검 • [규제이슈] 모든 수평적 분야(SPS, TBT, 규제일관성 등)에 대한 논의진행. 규제협력 부문의 수정초안 제출 • [규칙이슈] 지속가능개발(고용 및 환경)을 제외한 전 분야에 대해 논의. 관세 및 무역 원활화, 에너지 및 원자재, 국가간 분쟁해결 등 분야에서 진전
10차 협상 7월 13~17일	• 협상에 앞서 유럽의회는 TTIP에 대한 지지성명서를 통과시켰으며(7/8, 찬성: 436, 반대: 241), 미의회는 6월 무역촉진권한을 통과(6/24)시킴. - 유럽의회의 성명서는 투자자-국가 소송제(ISDS)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표명 • [시장접근] 원산지 규정, 서비스 및 상품, 농산물 시장접근의 양허안(text) 논의 • [규제이슈] 규제협력 및 일관성, TBT, SPS 외 9개 분야 논의 - 9개 분야: 자동차, 화학,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섬유, 정보통신기술, 엔지니어링, 농약 • [규칙이슈] 지속가능개발(고용 및 환경)과 투자 부문을 제외한 전 영역 논의

■ 미국과 EU 간의 막대한 투자규모와 금융거래가 차지하는 높은 비중을 고려할 때, 1) 금융서비스규제와 2) 투자보호 조항은 TTIP 협상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임.

■ [금융서비스 규제] 미국은 EU의 해외직접투자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시장으로 EU는 TTIP를 통해 금융규제에 대한 정책 공조를 강화함으로써 미국시장에서 활동하는 EU기업들에 대한 투자보호를 강화하고자 함.¹²⁾

표 6. 주요국에 대한 EU의 FDI 규모(2004~13)

(단위: 10억 유로)

국가*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미국	731.8	844.6	949.3	1015.1	1079.2	1204.7	1266.9	1598.9	1655.0	1686.5
스위스	245.0	309.7	364.6	454.8	463.3	518.5	555.5	683.5	679.0	667.1
브라질	70.5	74.1	92.4	106.3	108.5	139.7	198.9	248.2	246.8	272.2
캐나다	75.2	94.3	114.1	141.9	141.9	166.2	197.7	228.6	258.0	225.2
러시아	20.6	32.9	50.5	72.3	89.1	99.1	130.6	169.4	189.5	154.8

주: * EU의 투자규모 순 (1~5위).

자료: European Union Trade in the World, European Commission(2015).

12) TTIP explained, European Commission(2015).

- 미국과 EU는 TTIP 협상 이전에도 미국과 유럽 금융시장의 안정과 금융규제정책의 공조를 위해 Financial Markets Regulatory Dialogue(FMRD)를 통해 규제 관련 논의를 지속해온 바 있음.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EU 시장에서 각각 한층 강화된 금융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FMRD보다 향상된 정책공조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됨.¹³⁾
- 이러한 맥락에서 EU는 TTIP을 통해 금융서비스에 대한 투명하고, 책임 소재가 분명하며, 명확한 규칙에 근거한 규제체제를 마련하여 금융 안정을 위한 EU와 미국 간 협력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글로벌 규제의 구체적 내용은 G20을 포함한 기존의 협력 체제를 통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임.
- EU는 TTIP 내에서의 금융서비스에 대한 양측간 규제협력은 다음의 네 가지 기준으로 이루어질 것을 제안¹⁴⁾

EU의 금융서비스 규제 협상 원칙
① 시의적절하고 일관성 있는 규제 및 감독 기준 마련을 위한 협업
② EU와 미국 간 금융서비스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만한 새로운 규제 조치에 대한 사전 논의
③ 기존 규제가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요인이 되지 여부에 대한 공동 점검
④ 양측의 서로 다른 규제가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점검

- 협상 과정에서 EU는 금융시장 불안 해소를 목적으로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데 반해, 미국은 금융서비스의 후퇴를 우려해 이에 반대하는 등 의견일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투자보호 및 분쟁조정] EU는 2014년 EU-캐나다 FTA에서 최초로 EU 차원의 투자보호 장(chapter)을 체결하였고, 이후 체결되는 FTA에는 ISDS 조항을 통한 투자보호를 표방하고 EU 차원의 투자보호협정 원칙과 개선 방향을 발표함.

- 투자부문은 기본적으로 개별 회원국의 영역으로, 과거 EU FTA에는 투자자-국가 소송제(ISDS)가 포함되지 않았음.
- EU 회원국들은 1960년대부터 투자자-국가 소송제 (ISDS)를 포함하는 총 1,400여 건의 양자투자협정을 체결해 왔으며, 이 중 미국과의 협정은 9건임.¹⁵⁾
- 2009년 리스본 조약을 통해 EU에 투자보호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면서 EU-캐나다 FTA (CETA)를 시작으로 이후 체결되는 FTA에서 대해서는 ISDS 제도를 포함한 EU 차원의 투자보호정책을 적용하고 있음.
- EU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투자보호규정과 분쟁해결시스템의 두 부분에 대한 개선 원칙을 제시하였으며, 최근에 타결된 캐나다 및 싱가포르와의 FTA에 적용하였음(표 7 참고).

13) Financial Regulatory Chapter and ISDS in TTIP, European Banking Federation(January 2015).

14) EU-US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TTIP)-Cooperation on financial services regulation, European Commission(2014).

15) Investment in TTIP and beyond - the path for reform, European Commission(May 2015).

표 7. EU의 투자보호협정의 주요 개선 내용

투자보호규정 개선 내용	분쟁해결시스템 개선 내용
· [정부의 규제권한 보장] 양측 정부의 공익보호를 위한 합법적 규제 권한의 보장 · [간접수용] 공익보호를 목적으로 비차별적 방법으로 이루어진 정부조치의 우선권 보장. 이러한 경우 이익이 감소했다는 이유만으로 외국투자자가 보상 받을 수 없다는 점 명시 · [공평하고 공정한 대우 원칙] 투자자의 권리에 대한 광범위한 해석을 줄이기 위해 공평하고 공정한 대우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	· [제도남용방지] 근거 없는 주장의 조기종결 허용, 투자자의 여러 관할권에서 중복적 소송 및 제도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패소자의 소송비용 부담 원칙 · [투명성 제고] 문서공개, 청문회공개, 이해관계자의 의견제출 허용을 통한 제도의 투명성 강화 · [이해상충 방지] 중재자에 대한 강제력 있는 복무규정 적용을 통한 중재의 공정성 및 일관성 확보 · [세이프가드 포함] 투자규정 해석에 대한 정부 권한 확보를 위한 세이프가드 규정 포함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3), "Fact Sheet: Investment Protection and Investor-to-State Dispute Settlement in EU agreements." (November)

- EU는 TTIP에도 투자보호 및 투자자-국가 소송제도를 포함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나, ISDS 조항이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고 다국적 기업에 특혜를 줄 것을 우려하는 EU 내의 반대와 금융시장규제에 대한 미국 측과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음.
- EU는 TTIP 협상에 ISDS 조항을 포함하기 위해 2014년 3월부터 7월까지 투자보호 및 ISDS에 관한 의견수렴(public consultation)을 시행하여 약 150,000건의 의견을 받았음.
- 응답자들은 공통적으로 TTIP에 ISDS를 포함하는 것은 유럽이사회에서 채택한 협상지침의 조건들이 충족될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협상의 마지막 단계에 가서야 ISDS 조항의 포함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임.¹⁶⁾
- 특히 다수의 시민단체는 공익보호를 위한 정부의 규제권한(right to regulate)을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같은 투자자의 의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을 강조함.
- 반면 재계의 경우 TTIP에 투자보호와 ISDS 조항을 채택하는 것에는 전반적으로 동의하지만 오히려 기존의 투자협정에서보다 투자자에 대한 보호가 약화되어 EU의 기업투자환경이 악화될 것에 대한 우려를 제기함.

■ EU 집행위는 유럽의회, 회원국, 각국 의회 및 의견수렴과정에서 제기된 민간 의견을 반영하여 기존 ISDS 제도의 한계를 뛰어넘는 투자분쟁조정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지난 2015년 9월 16일 새로운 투자법원(Investment Court)의 창설 제안을 포함한 TTIP 투자협상 초안을 발표함.¹⁷⁾

- EU는 의견수렴 과정에서 지적된 현행 ISDS 제도에 대한 우려에는 공감하지만 궁극적으로 TTIP에 ISDS 조항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특히 미국과 기 체결된 9개 투자보호협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며, 전반적으로 EU 투자자들이 기존 ISDS 시스템의 가장 빈번한 이용자인 만큼 ISDS제도에 대한 EU 차원의 개혁이 요구된다고 평가함.

16) Report on the online consultation on investment protection and investor-to-state dispute settlement in the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Agreement, European Commission(January 2015).

17) European Commission(2015),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rade in Services, Investment and E-Commerce, CHAPTER II-INVESTMENT. (September 16)

- Malmstrom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투자법원 창설 제안을 통해 신뢰성 부족의 문제가 제기되었던 기존 ISDS 시스템의 한계를 뛰어넘어, 민주적 원칙(democratic principles)과 공개 조사(public scrutiny)에 입각한 새로운 투자 법원 시스템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설명함.
- 투자보호 규정에서는 정부의 규제권한 보호를 명시하고, 투자보호는 기존에 제시된 국적에 따른 차별금지를 포함하여 ‘① 보상없는 수용금지 ② 투자관련 자금이전 허용 ③ 공정·공평한 대우 및 안전보장 ④ 정부의 서면계약 이행 ⑤ 전쟁 또는 무력분쟁 시 손실보상’ 중 하나에 대한 위반이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함.
- 투자법원 제도는 국내 법원과 국제 법원의 주요 요소를 바탕으로 정부의 정당한 규제권한을 보호하고 투명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글상자 1. 미·EU 투자법원의 주요 특징(EU 집행위 제안)

- 투자법원제도의 주요 특징으로 ① 항소법원 신설 ② 높은 자격요건을 갖춘 법관에 의한 판결 ③ 명확한 투자자의 제소자격 정의를 들 수 있음.¹⁸⁾
- 투자법원은 1심법원과 항소법원으로 구성됨.
 - 1심법원은 15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각 사건에 대해 3인의 재판부가 판정.
 - 항소법원은 6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고, 각 사건에 대해 3인의 재판부가 판정.
 -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3인의 재판부는 무작위로 구성.

표 8. 투자법원의 구조 및 구성

1심법원 (First Instance Tribunal)	
재판관 구성(15인)	(EU 국적 5인) + (미국 국적 5인) + (제3국 국적 5인)
재판부 구성(3인)	(EU 국적 1인) + (미국 국적 1인) + (제3국 국적 1인)

항소법원 (Appeal Tribunal)	
재판관 구성(6인)	(EU 국적 2인) + (미국 국적 2인) + (제3국 국적 2인)
재판부 구성(3인)	(EU 국적 1인) + (미국 국적 1인) + (제3국 국적 1인)

- 재판은 국제사법재판소(ICJ) 또는 WTO 항소기구에 준하는 높은 자격요건을 갖춘 판사들에 의해 진행됨.
 - 재판관은 사전에 EU와 미국정부에 의해 공식 임명되며, 국내 법원과 마찬가지로 재판부 구성에 대한 분쟁당사자의 선택 권한은 존재하지 않음.
 - 재판부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판사들은 다른 투자분쟁의 법률자문을 맡을 수 없음.
- 투자자의 제소 자격은 명확하게 정의될 예정이며, 성별·인종·종교 또는 국적에 따른 차별, 보상 없는 수용, 재판 거부 등의 사건에 한정됨.

표 9. ISDS 제도와 투자법원 제도의 주요 차이점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 (ISDS)	투자 법원
공정성	분쟁당사자들의 중재인 선정	- 공식 임명된 소속 재판관이 판결 - 재판부 구성에 대한 분쟁 당사자의 선택 권한 부재
투명성	비공개 진행	소송관련 문서 및 공청회 공개
재심여부	재심 불가	항소 법원을 통한 재심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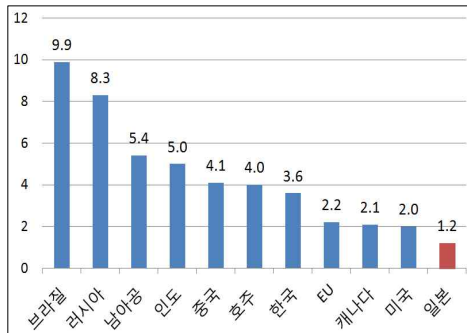
- EU 집행위는 이사회 및 유럽의회와 제시된 초안에 대한 논의를 거친 후 미국과의 협상에 EU 측 제안으로 제시할 계획이며, TTIP 협상과 병행하여 다른 국가들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는 상설 국제투자법원의 창설을 위한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나. 일·EU FTA

■ EU의 입장에서 볼 때 일본시장의 특징은 관세장벽이 낮은 반면, 비관세장벽이 높다는 점임.

- 일본의 MFN 관세율은 매우 낮은 수준인바, 무역장벽으로서 관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농업부문을 제외하고는 매우 낮은 상황임.
- 일본의 비농산물 MFN 관세율(가중평균)은 2013년 1.2%로 선진국 중에서도 최저 수준이며, 제조업 중 무관세 품목은 수입가치 기준으로 82.9%에 달함.
-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과의 FTA 체결 시 관세철폐로 인한 수출증가 효과는 농업부문을 제외할 경우 낮을 수밖에 없음.

그림 3. 비농산물 MFN 관세율 비교



주: 2012년 기준 수입량으로 가중평균한 관세율임.
자료: WTO Tariff Profile.

표 10. 일본의 MFN 관세율

		0%	0 ~5%	5 ~10%	10 ~15%	15 ~25%	25 ~50%	50% 이상
농산물	MFN 실행관세	35.9	17.7	16.7	7.2	10.4	6.0	5.4
	수입기준	47.1	3.1	14.6	8.5	7.8	8.8	0.1
비농산물	MFN 실행관세	55.7	26.2	15.3	2.1	0.3	0.3	0.1
	수입기준	82.9	9.6	5.9	1.4	0.1	0.1	0.0

주: MFN 실행관세는 2013년, 수입(물량)기준 관세율은 2012년 기준임.
자료: WTO Tariff Profile.

- 반면에 일본시장은 특유의 규제제도와 복잡한 유통시장으로 인해 비관세장벽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음.
- 대표적인 분야는 자동차 시장으로 일본의 자동차 수입관세는 0%이나, 외국산 자동차의 일본 시장점유율은 3.9%에 불과함.¹⁹⁾
- EU 집행위의 요청에 의해 작성된 보고서(Copenhagen Economics 2010)에 따르면 EU의 대일본 수출은 대부분의 제조업 분야에서 모델을 통한 예상치보다 낮게 나타나는데, 유럽 산업계는 이 원인을 일본의 비관세장벽으로 보고 있음(표 11 참고).
- 동 보고서는 운송장비, 식품·음료, 화학·제약, 금속 및 기계류에서 관세상당치로 22~45%에 해당하는 비관세장벽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FTA로 관세가 철폐될 경우 EU의 대일본 수출이 141억 유로 증가하는데 반해, 비관세장벽 철폐 시에는 최대 294억 유로까지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²⁰⁾

18) European Commission-Fact Sheet, Draft text on Investment Protection and Investment Court System in the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TTIP), 16 September 2015.

19) "American Automotive Policy Council. How Japan has Maintained The Most Protected and Closed Auto Market In the Industrialized World," <http://americanautocouncil.org/sites/default/files/Japans%2BProtected%2BAuto%2BMarket.pdf>.

20) Copenhagen Economics(2009), *The barriers to trade and investment between the EU and Japan*, p. 75. (November)

표 11. 일본의 비관세장벽

(단위: 관세상당치, %로 전환)

품목(제조업)	비관세장벽	품목(서비스업)	비관세장벽
식품, 음료	25.0	항공수송	2.0
화학, 제약	22.0	해상수송	8.0
전기기계	11.6	금융	15.8
차량	10.0	보험	6.5
운송장비	45.0	비즈니스, ICT	2.5
금속 및 금속제품	21.3	통신	24.7
목재, 종이제품	15.4	건설	2.5
기타 기계	30.0	개인, 문화 서비스	6.5

주: 일본의 비관세장벽은 대EU 수입에 대한 비관세장벽을 뜻함.

자료: Copenhagen Economics(2010), "The barriers to trade and investment between the EU and Japan," p. 71.

■ 이러한 맥락에서 EU는 일본의 비관세장벽 철폐, 정부조달시장 개방, 주요 수출품목의 관세인하, 지재권 보호(지리 표시제)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일본은 관세철폐 및 규제이슈에 중점을 둠.

- EU는 FTA 협상에 있어 비관세장벽의 철폐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FTA 협상과정 중 일본 측의 비관세장벽 철폐 노력을 협상유지의 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음.
 - 일부 EU 회원국(프랑스, 이탈리아)은 일본과의 FTA에 유보적 입장을 보여왔는데, 이는 FTA를 통해 일본의 비관세장벽을 철폐하는 것이 어려운 반면, 관세철폐를 통한 이익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임.
 - 일본과의 FTA 협상에 앞서 프랑스는 ① 정부조달시장 개방을 포함, 비관세장벽 철폐에 역점을 두고 ② 자동차 부문의 세이프가드 조치를 FTA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한 바 있음.
 -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EU 이사회는 EU 집행위에 일본과의 FTA 추진을 위한 협상권한을 부여함에 있어 첫째, 민감 산업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포함할 것과 둘째, 협상과정에서 일본 측의 비관세장벽 철폐 노력이 미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협상을 일방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pull the plug' 조건을 명시하도록 하였음.
- 일본은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와 전자제품의 EU 측 관세가 아직 높은바, 이에 대한 철폐 및 규제이슈에 관심을 갖고 있음.
 - EU의 자동차와 전자기기는 평균관세율이 각각 10%와 14%로 여전히 높은 상황

■ EU 측에서 진행한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는 일본의 비관세장벽 철폐에 초점을 두고 있음.

- European Commission(2012)에 따르면 EU와 일본 양측이 비관세장벽을 모두 50%씩 감축할 경우 EU의 GDP는 1.88%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비대칭적 감축하에서도 대일본 수출이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함(표 12의 주 참고).
- 이 결과는 TTIP 발효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들이 추정하고 있는 EU의 경제성장 및 무역 증가효과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이며, 이는 그만큼 EU 측이 일본시장의 비관세장벽을 높게 보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
 - ※ ECIPE(2010), ECORYS(2009), European Commission(2013) 등은 TTIP 발효 시 장기적으로 0.27~0.72%의 GDP 증가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

표 12. 일본·EU FTA 발효 시 경제적 효과

		소극적 개방(Conservative)		적극적 개방(Ambitious)	
		비대칭적 감축(B1)	대칭적 감축(B2)	비대칭적 감축(B3)	대칭적 감축(B4)
EU 경제에 미치는 효과	GDP 변화율(%)	0.34	0.75	0.79	1.88
	GDP 증가(1억 유로)	42,006	92,805	99,774	319,292
	총수출(FOB)	1.2	2.7	2.8	6.7
	총수입(CIF)	1.2	2.8	2.9	N/A
	대일본 수출증가율(%)	22.6	23.7	32.7	N/A
일본 경제에 미치는 효과	GDP 변화율(%)	0.27	0.27	0.67	0.67
	GDP 증가(1억 유로)	5,069	5,137	13,173	18,321
	총수출(FOB)	3.8	3.9	7.3	7.4
	총수입(CIF)	4.5	4.5	8.6	N/A
	대EU 수출증가율(%)	17.1	18	23.5	N/A

주: 1) 위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서는 상품부문의 모든 관세를 100% 철폐한다고 가정하고, 비관세장벽의 철폐에만 시나리오별로 차이를 둔.

2) 소극적 개방에서 비대칭적 감축(B1)은 일본의 비관세장벽(상품+서비스)을 20% 감축하고, EU는 상품의 비관세장벽을 6.6%, 서비스의 비관세장벽을 20% 감축한다고 가정. 대칭적 감축(B2)에서는 양측 모두 균등하게 20%씩 비관세 장벽을 철폐.

3) 적극적 개방에서 비대칭적 감축(B3)은 일본의 비관세장벽(상품+서비스)을 50% 감축하고, EU는 상품의 비관세장벽을 16.5%, 서비스의 비관세장벽을 50% 감축한다고 가정. 대칭적 감축(B4)에서는 양측 모두 균등하게 50%씩 비관세 장벽을 철폐.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2), "Impact Assessment Report on EU-Japan Trade Relations," p. 37.

■ EU는 일본의 비관세장벽 철폐 여부를 FTA 협상유지의 조건으로 제시하였으며, 이후 협상은 EU 측의 관세장벽 철폐와 일본 측의 비관세장벽 철폐가 교환되는 양상으로 진행됨²¹⁾

- EU는 협상개시 당시 일본 측에 30개 비관세장벽에 대한 리스트(1차)를 전달, 1년의 기간 중 일본정부가 철폐 노력을 보일 것을 요구하고, 이를 협상유지의 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음.²²⁾

- EU와 일본은 협상 전 사전조사(scope exercise)를 통해 양측의 비관세장벽을 파악
- 비관세장벽 1차 리스트는 자동차 및 SPS 관련 규제, 식품첨가제, 주류 및 화장품 분야를 포함.²³⁾

21) European Commission(2013), "A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EU and Japan," p. 1, memo. (June 17)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MEMO-13-572_en.pdf.

22) Nikkei Asian Review(2014), "EU expanding list of nontariff barriers in talks with Japan." (September 23)
<http://asia.nikkei.com/Politics-Economy/Economy/EU-expanding-list-of-nontariff-barriers-in-talks-with-Japan>.

23) <http://www.maltachamber.org.mt/content.aspx?id=383320>.

표 13. EU의 비관세장벽 지적과 일본의 대응

EU의 지적(자동차 부문)	일본의 대응
- UNECE의 규정과의 조화(EU 측 규제의 인정) - 국제표준 소형차 배출가스 측정방법(WLTP: Worldwide Harmonized Light-duty Vehicle Test Procedure)과의 조화 - 자동차 정비소의 구역제(zoning) 완화 - 고압가스 탱크에 대한 EU/ISO 기준 인정 - 능동형 안전장치 절차의 인정 - 경차(kei car)에 제공되는 세제혜택 폐지(차량 중량에 따른 취득세 차등)	– 자동차 부문 - 기준 및 인증 요구사항 조율 - UNECE 규정 도입을 위한 로드맵 발표(2012년 7월 10일) 2013년까지 45개 승용차 관련 규제 중 31개 채택, 2015년까지 47개 중 40개 채택 2016년까지 잔여 규정을 채택할 예정 - 자동차 정비소 구역제 - 지자체에 자동차 정비소 설립에 관한 허가권한 부여(2012년 3월) - 신규 자동차 정비소 설립 수 증가: 14(2011년)→ 32(2012년)→ 55(2013년) - 고압가스 탱크 - 연료전지차량에 대한 국제기술규제 1단계 채택(2013년 6월) - 일본경제산업성과 EU 집행위 산업총국(DG GROW) 간의 산업정책대화 개최(2014년 10월) – 기타 부문 - 식품첨가제 10개의 식품첨가제가 새로 인정 - 쇠고기 수입 규제 - 수입금지 철폐: 프랑스(2013년 2월), 네덜란드(2013년 2월), 아일랜드(2013년 12월), 폴란드(2014년 9월) - 주류판매 라이선스제 - 대형할인매장(cash and carry)을 위한 새로운 라이선스 범주 신설 - 의료장비 - 개정계약법 발효

자료: ACEA(2013), "INTA Committee: Invitation to Exchange of Views on the CARS 2020 Communication," pp. 9-11; JAMA(2015), Towards an EU-Japan FTA/EPA, pp. 9-10, (July 15)

- 2014년 4~5월 EU는 FTA 1년 협상의 점점을 통해 이 기간 중 일본의 비관세장벽 철폐가 충분한 수준의 진전을 이루었다고 판단하고 협상을 지속할 것임을 발표함.²⁴⁾
- 2014년 7월 EU 통상장관(Karel De Gucht)은 일·EU FTA 협상이 전반기를 지나 후반부로 들어섰다고 평가한 바 있는데, 이후 10월에 개최된 7차 협상에서는 협상 참가인원이 대폭 증가한 바 있음.
- 2014년 12월 8차 협상 시 EU는 일본 측에 2차 비관세장벽 리스트를 전달함.

24) European Commission, "EU-Japan talks on track after the one-year-on review,"

<http://trade.ec.europa.eu/doclib/press/index.cfm?id=1124&title=EU-Japan-talks-on-track-after-the-one-year-on-review>.

표 14. 일본·EU FTA 전개과정

일시	내용
2010년 4월 28일	제19차 일본·EU 정상회의 • 양측 정상은 일본·EU의 관계강화를 위한 포괄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위그룹(High level group)을 구성하는 데 합의 • 고위그룹은 관세, 비관세, 서비스, 투자, 지재권, 경쟁, 공공조달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FTA를 추진할 것을 차기연도 정상회의 의제로 제출
2011년 5월 28일	제20차 일본·EU 정상회의 • 정상회의에서는 1) 일본·EU FTA를 추진하고 2) 정치·글로벌·기타 분야의 협력을 다루는 구속력 있는 협정(예: 기본협정)을 병행하여 체결하기로 결정 • 일본·EU FTA의 내용과 개방수준을 검토할 수 있는 사전조사(scope exercise)를 1년간 실시하기로 결정
2012년 5월 31일	일본·EU 간 사전조사(scope exercise) 결과 발표
6월 13일	유럽의회는 일본·EU FTA에 관한 결의문을 채택: 찬성(76%), 반대(13%)
7월 18일	EU 집행위는 EU 이사회에 일본·EU FTA 협상을 위한 위임권(mandate)을 공식 요청
10월 18~19일	EU 정상회의 • 수개월 내에 일본과 FTA 협상을 시작할 수 있도록 협상지침에 합의할 것을 촉구
11월 29일	EU 이사회(외교/통상장관 회의): EU 집행위에 일본과의 FTA 협상권한을 승인 • EU의 수입관세 철폐에 대해 일본 측이 이에 상응(parallelism)하는 비관세장벽을 철폐할 것을 요구 • 민간산업 보호를 위해 세이프가드 조항을 포함할 것을 명시 • 일본 측의 비관세장벽 철폐 노력이 미미할 경우 협상 중단을 명시
2013년 3월 25일	• 양측 정상은 일본·EU FTA 협상 출범에 공식적으로 합의(아베 총리, 바로소 집행위원장, 룬푸이 EU 상임의장)
1차 협상: 4월 15~20일	• 양측의 기본입장 확인
2차 협상: 6월 24~7월 3일	• 비관세장벽 및 일본의 공공조달시장 개방문제 논의 • 양측은 FTA를 통해 상품, 서비스, 투자 및 통상관련 규범의 상호적이고 점진적인 자유화에 합의
3차 협상: 10월 21~25일	• 상품(시장접근, 일반규율, 무역구제), 기술장벽 및 비관세장벽, 원산지, 통관절차, SPS, 서비스, 투자, 공공조달, 지재권, 경쟁, 지속가능한 개발, 분쟁해결 등 광범위한 이슈에 대해 논의
2014년 4차 협상 2014년 1월 27~31일	• 상품교역, TBT, 무역보호조치, 원산지규정, 서비스 교역, 투자, 공공조달, 지재권, 경쟁정책, 분쟁해결과 같은 이슈가 논의된 것은 물론 기타 이슈로서 규제협력, 기업거버넌스, 비즈니스 환경, 전자상거래, 동물복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
5차 협상 3월 31일 ~4월 4일	• 양측은 관세 및 쿼터, 반덤핑보조금세이프가드 규정, TBT, 보건 및 위생, 원산지 규정, 통관원활화, 공공조달, 지리적 표시를 포함한 지재권 보호, 서비스투자, 지속가능한 개발, 동물복지, 기업거버넌스 및 비즈니스 환경, 전자상거래, 경쟁정책, 분쟁해결 조항 및 규제분야의 미래 협력 분야 등 폭넓은 논의를 진행
6차 협상 7월 7~11일	• 관세, TBT, 원산지, 통관원활화, 공공조달 접근, 서비스 무역, 투자 및 지재권 보호규범과 지리적 표시 등 다양한 분야의 이슈가 논의 • EU 집행위는 향후 협상에서 비관세장벽과 공공조달 시장접근 문제 등 회원국이 제기한 우려를 계속해서 해결해나간다는 입장
7차 협상 10월 20~24일	• 관세, TBT, 공공입찰, 서비스 무역, 투자경쟁 규정, SPS, 규제협력, 투명성 및 지재권 보호(지리적 표시제 포함) 등 논의 • 양측에서 100여 명 이상의 협상전문가 참여
8차 협상 12월 8~12일	• EU 측은 일본 측에 일본의 비관세조치 목록을 제출
9차 협상 2015년 2월 23~27일	• 관세, TBT, 공공조달, 서비스 무역, 투자규범, SPS, 규범 협력 및 투명성 등 협정에 포함될 대부분의 이슈를 논의 • 협정문안 확정에 주력하고, 2014년 12월 말 일본 측에 전달한 비관세조치 목록에 대한 논의 진전에 주안점을 둠.
10차 협상 2015년 4월 22~28일	• 관세, 공공조달, 철도, 서비스, 투자, 경쟁, 원산지, 관세 및 투자원활화, 지재권, 분쟁해결, 지속가능한 개발 및 SPS 이슈 등 광범위한 분야에 대해 논의
11차 협상 2015년 7월 6~10일	• 제23차 일본·EU 정상회의(2015. 5. 29)에서는 2015년 말까지 실질적인 FTA 타결을 목표로 설정 • TPP 협상이 지연됨에 따라 일·EU FTA 협상 진전에도 차질 발생 ¹⁾
12차 협상 2015년 9월 14~18일	• 투자부문을 제외한 전 영역에 대해 논의

자료: Nikkei Asian Review(2015), "Stalled TPP talks frustrate Japan-EU trade negotiations," (August 14)
<http://asia.nikkei.com/Politics-Economy/International-Relations/Stalled-TPP-talks-frustrate-Japan-EU-trade-negotiations>(검색일: 2015. 10. 5);
 European Commission, <http://ec.europa.eu/trade/policy/countries-and-regions/countries/japan/>; 일본외무성, http://www.mofa.go.jp/mofaj/gaiko/page6_000042.html에서 정리.

4.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TTIP 협상은 미국-EU 간의 강력한 정치적 의지 속에서 시작되었으나 초기의 조기타결에 대한 기대와는 달리 양측의 법률구조, 경제상황, 규제체계 및 이에 대한 접근방식의 차이로 의견을 조율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 협상이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음.

- 미국과 EU는 협상 타결 목표를 2015년 말로 정했으나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10차 협상 이후에는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말인 2017년 1월까지 타결하는 것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됨.
- TTIP는 규제의 상호인정 또는 조율을 통한 비관세장벽 철폐, 그리고 글로벌 통상규범 제정에 초점을 두고 있어 기존의 관세협상에 비해 협상의 범위가 넓고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음.
- 그러나 포괄적 협정이 성공적으로 타결될 경우 미국-EU 간 무역협정을 넘어서 국제 다자간 통상질서를 새롭게 정비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EU는 WTO체제를 통한 다자무역협정 원칙을 고수하되, 현재 WTO를 통한 통상협상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먼저 미국과의 규제협력을 통해 향후 다자무역통상규율을 정비하기 위한 사전적 조치를 시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 실제로 투자자-국가 소송제(ISDS) 조항에 대해 최근 EU 집행위가 투자법원제도(Investment Court System)의 창설을 제안하는 동시에 향후 국제투자법원(International Investment Court)을 설립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 바 있어, TTIP 협상에서 제기되는 규제 및 제도적 변화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국제투자법원은 EU 및 EU 회원국이 제3국과 체결한 무역 및 투자 협정에서 분쟁조정 메커니즘을 대체할 목적을 갖고 있으며, 향후 국제투자분쟁해결 시스템의 효율성·일관성 및 합법성을 강화시켜줄 것으로 기대됨.
- TTIP 협상 과정을 통해 새로운 투자법원 창설이 실제로 이루어질 경우 국제 투자분쟁 시스템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며 국제투자법원 창설과 같이 향후 국제적 제도로 정착될 가능성도 높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일본정부는 EU와의 FTA보다는 미국과의 TPP 협상에 보다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EU 또한 미국과의 TTIP 협상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이 두드러짐.

- EU와 일본은 2015년까지 실질적인 FTA 타결을 목표로 설정한 바 있으나, 이는 TPP 및 TTIP의 순조로운 협상진행을 염두에 두고 정한 것으로 판단됨.
- 일·EU FTA 협상은 TPP 협상이 지연됨에 따라 더불어 지연되는 양상을 보인 바 있는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5년 7월의 11차 협상이 단적인 예임(표 12 참고).
- 최근 미국-일본 주도의 TPP가 실질적으로 타결됨에 따라 일·EU FTA 협상도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아졌음.
- TTIP가 규제협력에 초점을 둔다는 측면에서 동 FTA의 진전은 일본과의 FTA 협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TTIP가 EU 내에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집중적인 홍보(지지)와 비판의 대상이 된 데 반해, 일본과의 FTA 협상은 일부 산업계를 제외하고는 대중적인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협상관련 세부사항도 공개되지 않고 있음.
- 반면에 TTIP와 일·EU FTA 모두 비관세장벽 철폐에 초점을 두는 만큼, TTIP 협상을 통해 규제협력의 틀이 공

고화될 경우 일본과의 FTA도 더 빠르게 진전될 가능성이 높음.

■ 과거 EU의 FTA 협상 방식 및 비준절차를 감안할 때 일·EU FTA의 발효까지는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음.

- 일·EU FTA는 이후 타결-가서명-잔여부분 협상(투자)-서명의 순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이후 유럽의회 및 일본의회 비준절차를 거쳐야 함.
 - 공식협상 후 발표되는 보도자료의 내용을 감안할 때 투자부분의 협상은 아직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EU가 싱가포르, 캐나다와 체결한 FTA에서 투자 부문 협상이 이미 종료되었고, TTIP의 투자 장 또한 협상 중임을 감안할 때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 2015년 말(양측의 목표시점) 또는 2016년 초에 동 FTA가 타결된다는 전제하에, 이후 양측의 서명까지는 1년 여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발효시점은 2017년 하반기 또는 2018년 전반기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됨.
 - ※ 한·EU FTA의 경우 타결(2009년 7월)에서 서명(2010년 10월)까지 15개월이 소요되었으며, 이후 유럽의회 비준(2011년 2월)까지 4개월이 소요되는 등 타결에서 발효까지 총 2년이 소요됨.
 - ※ 싱가포르·EU FTA의 경우 가서명(2013년 9월) 이후 협상완료(2014년 10월 투자 장 완성)까지 13개월이 소요되었으며, 현재 최종 서명을 위한 조약문 확인작업(legal verification)을 진행 중
 - ※ 캐나다·EU FTA의 경우에도 타결(2013년 10월) 이후 협상완료(2014년 9월)까지 11개월이 소요되었으며, 싱가포르의 경우와 유사한 절차가 진행 중임.

■ 일본·EU FTA 발효 시 한국기업의 대EU 수출에 대한 위협요인과 대일본 진출에 대한 기회요인이 모두 존재하는바, 적절한 활용전략이 필요함.

- 일·EU FTA가 발효될 경우 일본산 자동차 및 전자기기의 수출가격경쟁력이 높아지게 될 것이므로, 향후 2년 동안 일본제품의 가격경쟁력 상승을 상회할 수 있는 품질개선 및 사업네트워크 확장이 필요함.
 - 이 기간 중 EU가 싱가포르, 베트남과 체결한 FTA도 발효될 가능성이 높으나, 수출경쟁의 심화와 더불어 해외 투자유입이 줄고, 국내생산시설의 해외이전이 가속화될 소지가 있음.
 - EU의 규제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산업계와 협력하는 것도 한 방법임.
- 반면에 일·EU FTA로 인해 일본 내에서 유럽제품 기준이 인정되고 외국기업에 대한 진입장벽 낮아질 경우, 일본진출을 희망하는 국내기업에도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서비스시장 및 정부조달시장은 시장 특성상 FTA 상대국 기업에만 호혜를 주는 것이 어려운바, 제3국 기업의 사업 확장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KIEP